

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79254 판결 [계약금보증금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불△교회

피고, 피항소인 건●●●조합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가합28316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나9358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변론종결 2014. 4. 18.

판결선고 2014.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9,7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2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8면 3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6면 2행부터 7행까지 부분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 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제1심 판결의 제8면 3행부터 7행까지 부분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할 당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대상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증계약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지급채무도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이승철 판사 최영락